부산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운동규칙

[시행 2023. 11. 11.][규약 제43호, 2023. 11. 10., 일부개정]

제정 2023. 11. 1. 규약 제42호
일부개정 2023. 11. 11. 규약 제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 그 밖에 선거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산대학교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2. "오프라인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본부가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진행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3. "온라인 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본부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행하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4. "선전물"이란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물건(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그 매체에 배포되는 사진, 도표, 동영상, 게시글 등 모든 배포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동정책자료집"이란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배포하는 총학생회·단과대학 및 학과 학생회·동아리연합회 선거 후보자 소개 및 정책을 정리한 문서를 말한다.
6. "합동토론회"란 각 후보가 모여 정책, 선거운동본부의 방향 등 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토론하는 자리를 말한다.

제4조(의무) 입후보하려는 사람과 선거운동본부는「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세칙, 이 규칙을 준수하여 선거가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제2장 후보자등록

제5조(후보자등록) ① 세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은 11월 6일 오전 9시부터 11월 8일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추천서명을 받는 활동은 후보자등록기간의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다.

제6조(기탁금) ① 세칙 제32조에 따른 기탁금은 192,400원으로 한다.

② 기탁금의 환급은 세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진행한다. 다만, 세칙 제33조에 따라 후보자등록이 무효

가 된 때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3장 선거운동

제7조(선거운동)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본다.

1. 세칙 제36조 및 제37조에서 규정하는 활동
2. 입후보자의 신상을 알릴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내외의 활동
3. 선거운동본부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활동
4.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한 활동

②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회원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의 주요 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8조(선거운동의 시간적 범위) ① 선거운동기간은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한다.

②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선거운동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③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선거운동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제9조(선거운동의 장소적 범위) 선거운동은 학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10조(온라인 선거운동) ① 온라인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체에서만 가능하다.

1. 삭제
2. 삭제
3. 페이스북
4. 인스타그램
5. 유튜브

②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각각 매체에 하루에 게시글을 15개를 초과하여 작성하지 못하며, 댓글(답글)의 작성은 선거운동본부의 공식 계정으로만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본조제1항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라이브방송을 진행한 때에는 동영상 저장을 하지 않는 한 게시글 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본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매체에 게시하는 각각의 스토리는 하나의 게시글로 본다.

③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때에는 본조제1항에 해당하는 매체마다 공식계정 1개만을 지정하여 사용해야 하며 그 공식계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④ 본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원은 개인계정으로 본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매체의 공유기능을 이

용하여 선거운동본부의 공식계정이 작성한 게시물을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다만, 공유된 게시물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댓글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⑤ 본조제3항에 따른 공식계정의 친구를 추가하는 행위와 좋아요 행위, 다른 사람의 계정에 먼저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1조(선거운동원) ① 선거운동본부에 속한 선거운동원의 총수는 30인을 넘지 못한다. 다만, 선거운동원의 산입범위에서 총학생회장단 후보는 제외한다.

② 각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속한 선거운동원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다. 이 경우, 각급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자도 각급 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속한 선거운동원으로 본다.

제12조(마이크유세) ① 실외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선거운동(이하 “마이크유세”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과 장소에 한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이크유세를 하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

1. 선거운동기간의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월광장 열린터
2. 선거운동기간의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시월광장 열린터
3. 선거운동기간의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연대 삼거리
4.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간 및 장소

② 마이크유세를 할 때에는 마이크와 앰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제13조(합동토론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1회 이상 소집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후보자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해야 한다.

② 합동토론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후보자등록을 완료한 후보자가 단수인 때에는 후보 초청 공청회로 합동토론회를 갈음한다.

제4장 선전물

제14조(선전물) ① 선전물은 일반선전물과 특수선전물로 구분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전물을 배포, 부착, 설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는 날로부터 최소 24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선전물의 사용과 개수, 용도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선전물의 시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선전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일반선전물) ① 일반선전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스터

2. 현수막

3. 유인물

② 일반선전물의 개수와 규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규격은 10분의 1 이내로 오차를 둘 수 있다.

1. 포스터의 크기는 415mm*580mm에서 600mm*850mm로 하고, 최대 개수는 300매로 한다.

2, 현수막의 크기는 810mm*100mm에서 9,000mm*1,100mm로 하고, 최대 개수는 50개로 한다.

3. 유인물의 크기는 145mm*210mm에서 297mm*423mm로 하고, 최대 개수는 20,000개로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일반선전물은 배포, 부착, 설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특수선전물) ① 일반선전물을 제외한 모든 선전물은 특수선전물에 해당한다.

② 설문조사를 목적으로 선거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설문지는 특수선전물로 본다. 이 경우 설문지는 전자적인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

제16조의2(명함)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의 명함은 제16조에 따른 특수선전물로 본다.

② 본조제1항에 따른 명함에는 기호번호, 선거운동본부의 이름과 슬로건(공약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 후보자의 성명·사진·경력, 선거운동본부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QR코드는 게재할 수 없다.

③ 본조제1항에 따른 명함의 크기는 45mm*85mm에서 55mm*95mm로 한다.

④ 본조제1항에 따른 명함은 선거운동원이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선거운동복) ① 선거운동복은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을 위해 제작한 의복류를 말하며 특수선전물이다.

②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복을 착용할 수 없다.

③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원은 자신이 속하지 아니한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복을 착용할 수 없다.

제18조(온라인선전물) ① 온라인선전물은 특수선전물의 일종으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매체에 게시할 수 있는 사진, 도표 그 밖의 그림, 동영상 및 게시글을 말한다.

② 온라인선전물의 개수와 규격 등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사진, 도표 그 밖의 그림의 가로・세로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가 정한 선전물 크기의 비율을 준용하고 한 게시글 당 개수의 제한두지 않는다.

2. 동영상의 가로・세로의 비율에는 제한두지 않으며 한 게시글 당 시간과 개수는 제한두지 않는다.

③ 온라인선전물 가운데 사진, 도표 그 밖의 그림의 비율에 관하여는 10분의 1까지 오차를 허용한다.

④ 온라인선전물은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삭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전달하게 하거나 내용을 수정하여 종래의 상태를 변경하지 못한다.

⑤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선전물은 배포 4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9조(선전물의 부착) ① 부착할 수 있는 선전물(이하 “부착물”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포스터
2. 현수막

② 부착물은 풀 또는 양면테이프로 이를 부착하지 못한다.

③ 부착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및 사물 등에 부착하지 못한다. 다만, 현수막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연물을 훼손(수목을 절단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행위)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끈을 이용하여 이를 부착·게시할 수 있다.

1. 유리(다만, 유리재질로 제작된 게시판은 가능하다)
2. 자판기
3. 바닥
4. 천장
5. 거울
6. 강의실 내부(전산실을 포함한다)
7. 사물함
8. 학과 학생회실
9. 동아리방
10. 대학생활원 내부
11. 식당 내부
12. 도서관 열람실 내부
13. 공중전화 박스
14. 계단
15. 인터넷 검색기
16. ATM기
17. 정수기

18. 멧돼지, 고양이, 비둘기, 나무, 바위 그 밖의 자연물과 사람

19.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

④ 부착물 가운데 포스터는 1개 게시판에 최대 2개까지 부착할 수 있다.

⑤ 선거운동본부가 부착물을 부착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착 장소와 부착 개수를 알려야 한다.

제5장 선거비용

제20조(선거비용) ①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준비 및 진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금액을 포괄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비용으로 3,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지 못한다.

제21조(선거보조금)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비, 대학회계 일부로 선거운동본부에 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회계 선거지원금은 1,000,000원을 초과하지 못 한다.

② 선거운동본부는 선거비용 지출을 위한 통장을 일원화하고 그 통장사본을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선거운동본부가 선거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지출용도를 선전물 제작으로 한정한다.

제22조(선거비용의 결산) ① 선거운동본부는 세칙 제42조에 따라 지출한 선거비용 일체에 대하여 [별지]서식으로 결산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 결산안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세입과 세출의 구분은 [별표 1]을 따른다.

③ 선거운동본부는 결산안의 각 항목별로「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선거운동본부가 본조제3항에 따른 적격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학생회비 선거지원금에서 누락된 증빙자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학내의 범위) ① 세칙과 이 규칙에서 “학내”는 부산대학교 각 캠퍼스 내를 말한다.

② 부산대학교 각 캠퍼스의 영역은 [별표 2]지도의 붉은 선 이내로 한다.

③ 언어교육원, 보육종합센터, 그 밖의 학외에 있는 학교 건물은 해당 건물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학내로 인정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 지도의 세부영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룰미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룰미팅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제25조(규칙개정의 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을 개정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선거운동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조제1항의 통지를 할 때에는 개정된 규칙 전문을 종이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선거운동본부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26조(공동정책자료집) 선거운동본부는 공동정책자료집에 들어갈 내용을 11월 15일 오전 10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제재

제27조(제재) ① 이 규칙을 위반한 선거운동본부에게는 [별표 3]에 따라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본조제1항의 규칙위반행위에 관하여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회칙, 세칙에 위반되거나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으로 선거시행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

③ [별표 3]에 명시되지 않은 회칙, 세칙, 이 규칙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세칙 제67조제1항에 따라 제재를 부과한다.

부 칙(제42호, 2023. 1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한)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1일에 폐지한다.

제3조(의안의 정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규칙에서 서로 어긋나는 조항·자구·숫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정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의한 취지나 이 규칙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함은 금지한다.

부 칙(제43호, 2023.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선거비용 세입·세출 결산안 관련(제22조와 관련)

1. 세입 및 세출의 구분

구분	내역	
세입	1. 학생회비지원:	학생회비로 지원받은 선거보조금
	2. 교비지원:	대학회계로 지원받은 선거지원금
	3. 자체수익:	개인부담금 등 선거운동본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입
	4. 기타수익:	제1호부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
세출	1. 운영비:	비품 등 선거운동본부 운영에 필요한 지출
	2. 선전물:	선전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출
	3. 선거운동:	선전물 제작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지출
	4. 기타비용:	제1호부터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출

2. 세입 및 세출 분류코드

구분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세부내역	비고
세입	1 : 학생회비지원			사용용도 및 사용내역 표기	세부 내용 기재
	2 : 교비지원				
	3 : 자체수익				
	4 : 기타수익				
세출	5 :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	비목		각 내역에 따라 산출근거 등 세부내용 작성
	6 : 선전물				
	7 : 선거운동				
	8 : 기타비용				

※ 비목 분류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재정운용세칙」을 따름

[별표 2] 학내의 범위(제23조와 관련)

부산캠퍼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

※ 대학생활원의 경계는 대학생활원으로 입장하는 가장 첫 번째 게이트까지로 한다.

※ 구조물의 형태로 된 주차장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에서 제외한다.

※ 정문, 무지개문, 북문, 남문의 경계는 차량차단기 및 요금정산소까지로 한다.

※ 대운동장의 범위는 경암체육관 교수연구동과 대운동장을 들어가는 문 사이까지로 한다.

※ 제2사범관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울타리까지를 범위로 한다.

※ 성학관, 경영대 등 쪽문은 캠퍼스에서 캠퍼스 밖으로 넘어가는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까지로 한다.

양산캠퍼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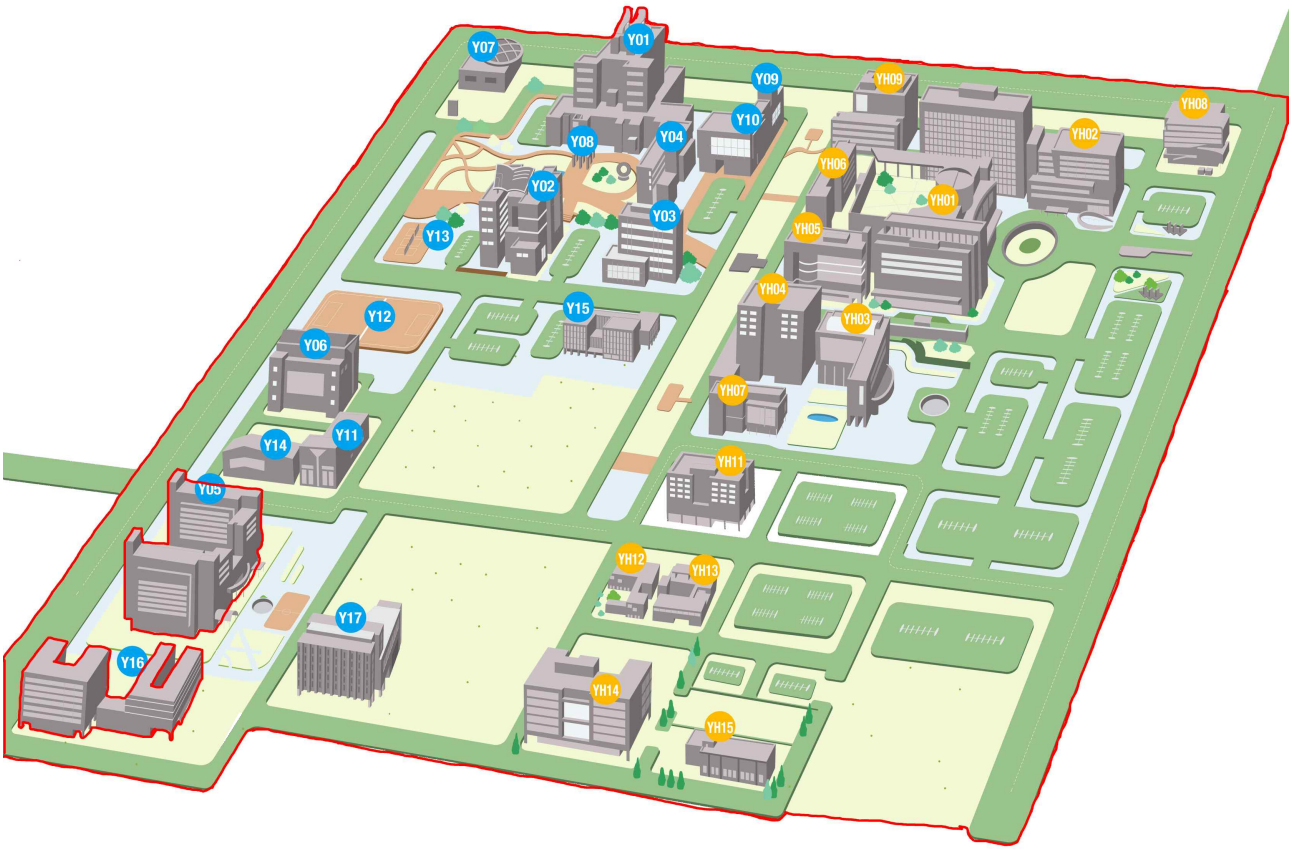

밀양캠퍼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

아미캠퍼스의 선거운동이 가능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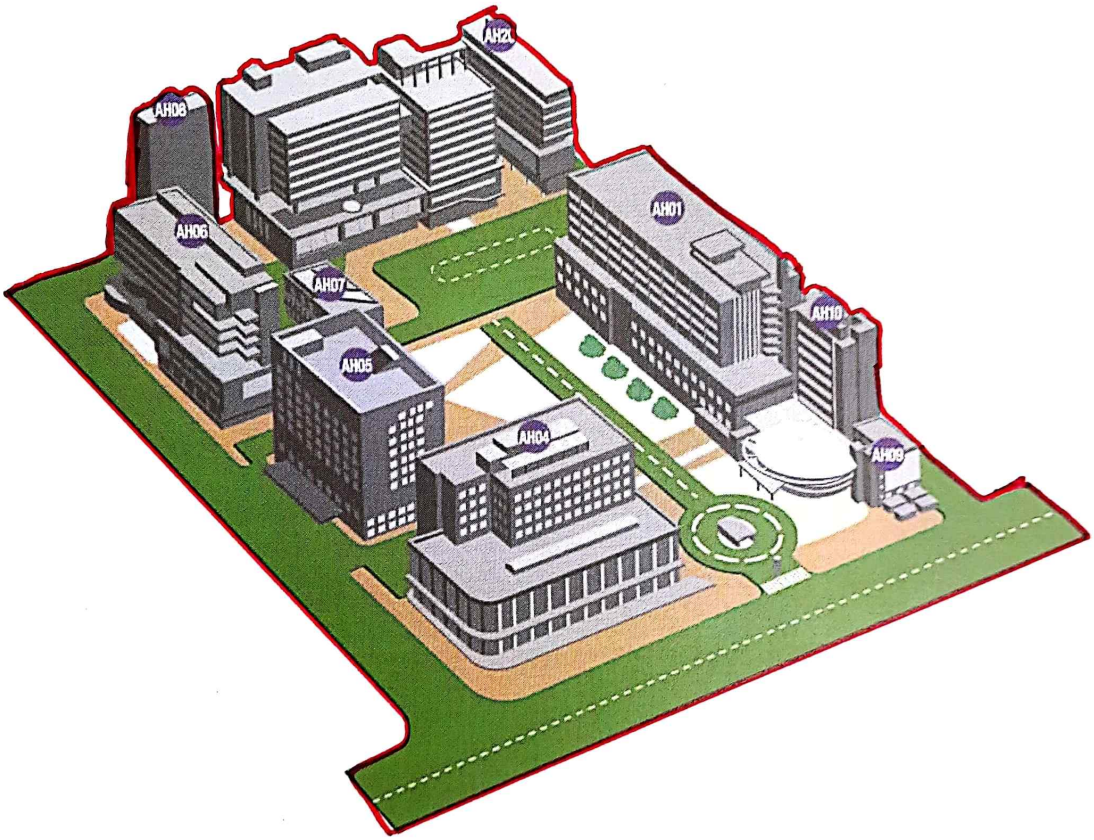

[별표 3] 선거운동본부 제재 기준

구분	위반 행위	처리
경고 부여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선거운동기간)	경고 1회
	2.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선거운동기간 이후 온라인선전물 배포 및 변형)	경고 1회
	3. 제2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선거비용 상한 초과)	경고 1회
주의 부여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추천서명시간)	주의 2회
	2. 제9조를 위반한 경우(선거운동의 장소적 범위)	주의 2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온라인선거운동 범위)	주의 2회
	4. 제14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선전물의 승인)	주의 2회
	5.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직인이 날인되지 않은 일반선전물 사용)	주의 2회
	6. 제8조제2항부터제3항을 위반한 경우(선거운동시간)	주의 1회
	7. 제10조제2항부터제5항을 위반한 경우(온라인 선거운동)	주의 1회
	8.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선거운동원)	주의 1회
	9. 제12조를 위반한 경우(마이크유세)	주의 1회
	10. 제13조를 위반한 경우(합동토론회)	주의 1회
	11.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선전물의 규격)	주의 1회
	12.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선거운동복)	주의 1회
	13. 제19조를 위반한 경우(부착물)	주의 1회
	14. 제21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통장사본 제출)	주의 1회
	15. 제26조를 위반한 경우(공동정책자료집 제출기한)	주의 1회

[별지] 선거운동본부 결산안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56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OOOOOOOO 선거운동본부 선거비용 세입·세출 결산안

작성자 직책 성명
제출일 2023.00.00

기록물 관리자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요섭

1. 선거 비용 결산 요약 (사용 시기 : 2023.11.09. ~ 2023.00.00.)

가. 세입내역 요약

구분		내역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100	*선거지원금*	*110*	*선거보조금*	*111*	*선거보조금*		
200	*교비지원금*	*210*	*교비지원금*	*211*	*대학회계 지원금*		
300	*자체수익*	*310*	*후보자 부담금*	*311*	*회장후보 부담금*		
				312	*부회장후보 부담금*		
		320	*선거운동원 부담금*	*321*	*선거운동원 부담금*		
400	*기타수익*	*410*	*후원금*	*411*	*OO 후원금*		
합 계							

나. 세출내역 요약

지출내역		세부 지출내역		비목		금액(원)	비고
500	운영비						
600	선전물						
700	선거운동						
800	기타비용						
합계							

2. 선거 비용 사업분야별 세출 세부내역 결산

가.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		비목		세부내역	금액(원)	비고
합계						

3. 선거 비용 세부 결산내역

No	일시	코드	세부내역	거래명	수입(원)	지출(원)	비고(결제 방식 등)
1	*'23.11.00*	*1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	*증빙자료 명시된 거래명*	*5,000,000*		*계좌이체*
2	*'23.11.00*		*현수막 구매*	*증빙자료 명시된 거래명*		*600,000*	*신용카드 결제*
3	*'23.11.00*		*포스터 구매*	*증빙자료 명시된 거래명*		*600,000*	*대학회계 결제*